#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9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 문진석 • 이춘석 • 이연희

박정현 · 조인철 · 이정문

박용갑 • 김문수 • 김윤덕

이건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,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따라 서울시,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.

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, 시멘트,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 •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건 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,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6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마목 중 "궁도장 등"을 "궁도장, 맨발걷기길 등"으로 한다.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공원조성계획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·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3. (생략)	1. ~ 3. (생략)		
4. "공원시설"이란 도시공원의	4		
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			
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			
말한다.		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<u>궁도장</u>	마 <u>궁도장,</u>		
<u>등</u> 운동시설	<u>맨발걷기길 등</u>		
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	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		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⑥ 공원조성계획에는 맨발 건		
	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		
	조성・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		
	<u>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		